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등 6개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, 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등 4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해제 및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2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을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

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조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4조(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3조의3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: 2022년 1월 1일

제6조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프로그램의 범위: 2022년 1월 1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: 2017년 1월 1일	<삭 제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구·복원비 산정기준: 2017년 1월 1일	<삭 제>
4. 제12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: 2017년 1월 1일	<삭 제>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17조에 따른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기준: 2016년 1월 1일	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2조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24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가로수 조성·관리기준: 2016년 1월 1일 5. ~ 8. (생략)	제7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: 2016년 1월 1일	<u><삭 제></u>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기준: 2016년 1월 1일	<u><삭 제></u>
6. ~ 7. (생략)	6. ~ 7. (현행과 같음)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 <u><신 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제3조의3에 따른 목재교 육프로그램 인증기준: 2022년 1월 1일</u>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0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의2.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프로그램의 범위:
	2022년 1월 1일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